

의안번호	2201852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4. 8. 20.
추계번호	24C2076
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)	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,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	재량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의 설치 및 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(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의 설치 및 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것

이나, 학교의 장이 시설이용비용 외 다른 비용이 발생하여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

- 현행법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장의 결정에 따라,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함
- 개정안은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의 이용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함

□ 개정안은 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학교시설의 설치 및 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지원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, 지원요건과 지원범위 및 수준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

○ 참고로 2024년 7월말 기준 현재 학교시설 개방현황은 다음 [표 1]과 같음

[표 1] 2024년 학교시설 개방현황

(단위: 개교)

학교급	개방여부	운동장	체육관	강당	일반·교과교실	특별교실	시청각실
초	유	5,225	3,359	1,346	2,836	2,369	844
	무	997	1,981	831	3,444	3,818	1,325
	시설없음	58	940	4,103	-	93	4,111
중	유	2,382	1,581	570	1,733	1,207	590
	무	442	492	413	1,486	1,931	675
	시설없음	395	1,146	2,236	-	81	1,954
고	유	1,809	1,208	495	1,201	942	562
	무	502	574	460	1,168	1,408	755
	시설없음	58	587	1,414	-	19	1,052
특수학교	유	104	67	54	68	63	42
	무	58	38	31	124	121	61
	시설없음	30	87	107	-	8	89
각종학교	유	30	16	9	28	17	10
	무	29	15	30	49	53	17
	시설없음	18	46	38	-	7	50

주: 2024.8.1. 학교정보공시 기준 작성

자료: 교육부

□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